

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 출 일 : 2014년 9월 4일
- 회 부 일 : 2014년 9월 5일

2. 제안이유

-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지방공무원법」이 개정·시행('13. 12. 12)됨에 따라,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직종개편)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 등
 - “계약직공무원규정” → “지방공무원임용령”, “계약직공무원” → “임기제공무원”으로 변경, 여비조례(표준안)과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1에 관한 조문내용 보완.
- 나. 직종개편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규정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“계약직 공무원”이 “임기제일반직 공무원”으로 전환 되는 등 「지방공무원법」이 공무원 직종 개편 등의 내용으로 개정 (2013. 12. 12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기존 조문 중 법령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.

※ “계약직공무원규정 → 공무원임용령”, “계약직공무원 → 임기제공무원”으로 변경

※ 또한 직종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임(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).

- 법령정비기준에 따르면 조례 제1조의 목적 조항에는 약칭 규정(이하 “시공무원”이라 한다)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약칭 규정을 제2조의 관련 조문에 규정하였으며, 본 조례가 2008년 개정된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 띄어쓰기 등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일부 용어 정리 외에는 별다른 입법사항은 없음.

〈조문 정비 사항〉	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	→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
- 소속 장관	→ 소속 장관
- 소속기관의 장	→ 소속 기관의 장
- 행정안전부장관	→ 안전행정부장관
- 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	→ 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
- “공무원보수규정”	→ “공무원 보수규정”

- 안 제4조제7호 중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1에서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

이는 「공무원임용령」 과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종류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부득이하게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별도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며, 여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음.

「공무원 임용령」	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<p>제3조의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반임기제공무원: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. 전문임기제공무원: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.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: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(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4. 한시임기제공무원: 법 제71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0조제2항·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	<p>제3조의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반임기제공무원: 예산 및 일반 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.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: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(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. 한시임기제공무원: 법 제63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3제3항·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

- 그 밖에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 개정 사항은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“계약직” 용어 및 기존 계약직 관련 법령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기술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나, 금번 개정안에 누락된 정비가 요망되는 조례 목록은 아래와 같음.

※ 개정안 부칙 중 직종 개편에 따른 타 법규 정비 대상 조례
 -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-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」
 -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

〈계약직 관련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 목록〉

① 「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」

제18조(설치)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(이하 “보호관”이라고 한다)을 둔다.
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」

제7조(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)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,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정하고,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른 전임계약직 마등급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.

③ 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시민감사옴부즈만 설치 등) ②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④ 「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」

제5조(연구원 및 보조원) ① 위원회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임연구원을 둔다.
 ② 제1항의 전임연구원은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

⑤ 「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기관장의 채용 등) ①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·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.

②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2년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다만, 지방직영기업의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다.

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과의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 제7조에 따른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제13조(임용권의 위임) ① 시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.

1.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

제15조(근무실적 평가)

② 기관장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 제8조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